



2002년 달라지는 인지세법

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<02>503-9224> 제공

< 주요개정내용 >

1. 과세문서 조정

- 중산·서민층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기재금액 1억원이하 주택 소유권이전증서와 2천만원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비과세
-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시 거래비용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, 정관, 조합계약서, 합병계약서 등을 과세제외
-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
- 도급에 관한 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
- 전화가입신청서, 기업어음 등을 새로이 과세문서에 추가

2. 세액조정

- 부동산소유권이전증서, 금전소비대차계약서, 도급증서, 상품권, 골프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, 주권 등

3. 현금납부 및 환급범위 확대

- 계속적·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납부 가능
-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·소인하는 경우 과오납한 세액도 환급

4. 가산세제도

- 미납부 가산세(300%)와 무납부 가산세 신설



◆ **관계법령**

-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(법률 제 6537호) : 2001.12.29 공포
- 인지세법시행령 중 개정령(대통령령 제 17463호) : 2001.12.31 공포

1. 과세문서 범위 조정

(인지세법 제3조 제1항 /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,3 / 제3조 제4조 제5조)

가. 개정취지

- 국민·기업의 경제활동(계약서 작성)에 수반되는 세부담을 덜어주고, '92년이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문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

나. 개정내용

비과세·과세제외되는 문서	신규로 과세되는 문서
○ 기재금액 1억원이하 주택소유권 이전 증서	○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
○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	○ 전화가입신청·계약서
○ 기재금액 2천만원이하 금전소비대차증서	○ 주식선물거래계좌약정서
○ 용선계약서	
○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	
○ 임치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	
○ 정관, 조합계약서, 합병계약서	
○ 특약점, 대리점 계약서	
○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과 작성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	
○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	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2.1.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



2. 세액 조정 (인지세법 제3조 제1항)

가. 개정취지 :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○ 기재금액별 차등정액세 적용 과세문서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: 1만원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: 2만원 2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: 3만원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4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: 7만원 1억원초과 5억원이하 : 15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: 25만원 10억원초과 : 35만원	○ 기재금액별 차등정액세 적용 과세문서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: 2만원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4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: 7만원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: 15만원 10억원초과 : 35만원
○ 골프, 콘도미니엄 회원권 증서 : 5천원	○ 1만원
○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: 3백원	○ 1천원
○ 상품권 : 2백원	○ 4백원
○ 주권, 채권, 수익증권 등 : 2백원	○ 4백원
○ < 신 설 >	○ 기업어음 : 4백원
○ < 신 설 >	○ 전화가입신청·계약서 : 1천원
○ < 신 설 >	○ 주식선물거래계약정서 : 3백원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02.1.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

3. 현금납부 및 현금범위 확대 (인지세법 제8조 제8조의3,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)



가. 개정취지 : 현금납부 대상과 환급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증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○ < 신 설 >	○ 계속적·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납부 가능
○ < 신 설 >	○ 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·소인시 착오로 과·오납한 경우에도 환급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02.1.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

4. 가산세 제도 (인지세법 제8조의2,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2)

가. 개정취지 : 자진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 새로이 신설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○ < 신 설 >	○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수입인지를 미첩부, 과소첩부(무납부, 과소납부 포함)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다만, 현금납부신고시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2.1.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